C - 77 - 2013



<그림 10> 주탑 슬립폼 안전시설(안전난간, 승강통로) 설치 예

- (다) 슬립업을 시작한 이후 설치하는 전기시설, 건설용 리프트 등은 정확한 위 치를 확보하여 간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라) 슬립폼 부재 조립 시는 볼트 체결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(마) 통로 주변은 자재가 적치되지 않도록 크레인 등의 양중기 작업반경내에 자재 야적장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(바) 각각의 작업대에는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(사) 작업시작 전 작업방법, 작업순서 및 안전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야 한다.
- (7) 슬립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.
- (가) 콘크리트 타설은 균일하게 20~30센티미터 높이로 하며, 거푸집 내부에는 콘크리트가 항상 일정 높이에 있도록 유지하고, 작업대 위에 남겨진 콘크 리트가 경화되어 거푸집 내부로 밀려들어가지 않도록 작업대와 분배기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나)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분배용 슈트를 사용하여 타설 하고 콘크리트가 작업장 내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입하여야 한다.
- (다) 콘크리트를 상부로 운반할 경우에는 상·하부에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장비 운전원 등과 직접 교신을 하여야 한다.
- (라) 콘크리트 운반 시 잔재물 낙하에 대비하여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.